

[날짜]

[임대인 이름]

[임대인 주소]

**Re:** [세입자 이름, 주소 및 아파트 번호]에 대한 해결 또는 종료에 관한 3일 통지 준수에 있어 추가 시간을 요구하는 합리적 요청

친애하는 [임대인]님께,

이 서신은 귀하께서 저에게 해결 또는 종료할 것을 요구하신 3일 통지 날짜[통지 날짜]와 관련하여 합리적 편의를 요청하는 공식적인 서신입니다. 귀하는 통지서에서 제가...[임대인이 귀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. 예를 들어, 임대인이 공동 구역 등에서 귀하의 개인 자산을 제거하여 임대 계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]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. 저의 장애에 대한 합리적 편의로서 제가 통지를 준수하는데 [년/월/일]까지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.

저는 [신체적/정신적]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. [원하지 않으시면 구체적인 진단을 공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] 저의 장애로 인해 이처럼 짧은 시간 내에 통지에 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... [3일 통지를 준수할 수 없는 이유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장애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십시오. 예를 들어, 장애가 걷기, 무거운 물건 집기 또는 기타 작업 및 활동 완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는 정신적 장애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약물을 조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간병인, 가족 구성원 또는 사회 복지사처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] 따라서 합리적인 편의로서 통지를 준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

다가구 주택을 운영하는 주택 제공 업체는 연방공정주택법(FHAA, **Federal Fair Housing Act**)과 캘리포니아 공정고용 및 주택법 의 적용을 받습니다. 연방과 주의 공정주택법 모두 주택 제공자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미국법전 42편 3604조, 캘리포니아주정부법 12927조, 12955조를 참조하십시오. FHAA는 장애인에게 '거주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동등한 기회'를 부여하기 위해 주택 제공 업체가 '규칙, 정책, 관행 또는 서비스에서 합리적인 편의를

제공'할 것을 요구합니다. 미국법전 42편3604조(f)(3)(B), 미연방법 24편 100.204조(a), *Giebeler v. M & B Assocs.*, 343 F.3d 1143조, 1146조 (9th Cir. 2003). 구체적으로, 'FHAA는 [장애가 있는 사람들]의 필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.' 물리적인 편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의 임차 종료를 관장하는 정책과 같은 '임대를 관장하는 관리 정책'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*Giebeler*, 343 F.3d at 1146-1147, *United States v. California Mobile Home Park Mgmt. Co.*, 29 F.3d 1413, 1416 (9th Cir.1994) ('Mobile Home I').

결론적으로, 저는 합리적인 편의로서 해결 또는 종료 3일 통지를 준수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. 체적으로[년/월/일]까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. 저의 요청을 수락하실 수 없다면, 공정주택법에 따라 장애 관련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편의를 시도하고 제공하기 위해 저와 상호적 절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.

시간에 민감한 상황이니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. [연락처 정보]로 저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. 합리적인 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부당하게 지연되면 거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이 합당한 편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퇴거 소송 조치에 있어서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항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
진심으로,

[귀하의 이름]